



Korean Tax Newsletter

2026년 2월

CONTENTS

세법개정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공포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세무동향

- 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예규판례

○ 법원

- 구 지특법 제 58 조의 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판단 시 종전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주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 외국 금융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공동중개 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 조세심판원

-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정경제부

-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 상승차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익분 배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세청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인 외국법인이 파트너십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의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법개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공포

정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16(금)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의견과 1.16.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개정안은 2.27(금) 공포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2.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 보도자료\(Link\)](#)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합리화

〈수정안〉 적용시기 조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전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수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중부령 §3①)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을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완화

〈수정안〉 적용시기 조정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수정안〉 계산방법 합리화

- (양도차익 계산)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수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조특령 §104의24)

〈수정안〉 공시방법 변경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금융위·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예시)을 배포할 계획)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2.2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보도자료\(Link\)](#)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의 2)

〈개정안〉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신규 3개, 확대 2개)

분야		세부기술
신규	반도체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미래형 운송이동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확대	반도체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사업화시설 (설계·제조 ⇒ 패키징까지 확대)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6)

〈개정안〉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신규 6개)

분야		세부기술
신규	바이오·헬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소부장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탄소중립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4)

〈개정안〉 안전시설 범위 확대

-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건설공사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 포함,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비접촉식 개폐장치, 자연재해 예방 목적 방파호안, 추락방지 목적 족장 및 트러스 등 구조물 추가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유인 확대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 11 신설)

〈개정안〉

-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②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콘티·그림·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제작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

- (공제대상 제작비용의 범위) [기획] 시나리오, 기획비, 인세 / [제작] 작가비, 제작 프로그램비, 디자인비 / [편집] 편집비, 감수료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작비용)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동일)
 - (2 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공제비용 계산방법)
[첫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하여 지출한 모든 제작비용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비용
-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부규정 마련**(조특칙 §47 의 3 신설)

- 〈개정안〉**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방식
-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 〈개정이유〉** 부채비율 산정방법 명확화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추가**(국조칙 §2)

- 〈개정안〉** 제출대상 자료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국외특수관계인 수정신고서 등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관세칙 §48①(5) 신설)

- 〈개정안〉**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미반출 미회수 면세품 추가
-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품 구매 물품으로서 회수하지 않은 물품
- 〈개정이유〉**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의 편의 제고

세무동향

국세청, 12 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12 월 31 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 월 31 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 만 개로 전년에 비해 3 만 개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 10 만 개 법인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2.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한) 12 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 월 31 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 월 30 일 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고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천만원은 3 월 31 일에 나머지 금액은 4 월 30 일까지(중소기업은 6 월 1 일까지) 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 월 31 일에 나머지 금액은 4 월 30 일까지(중소기업은 6 월 1 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연장)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 월 31 일에서 6 월 30 일까지로 3 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 월 30 일) 보다 20 일 앞당겨 4 월 10 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
- (신고)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 월 31 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 월 30 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 개월 (12 월 31 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예규판례

[법원] 구 지특법 제 58 조의 3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판단 시 종전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경우에도 사업주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창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 두 34876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 1923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58 조의 3 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기준

■ 사안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그 세액의 100 분의 75 를 감면받았음. 그 후 피고는 원고 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법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1 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75 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 6 항 제 3 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 6 항 제 4 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 두 115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6 항 제 3 호, 제 4 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소외 1 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원고 법인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인 소외 3 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소외 1 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6 항 제 3 호, 제 4 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소외 1 이었는지, 이러한 소외 1 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별개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원고 법인에 의해 벽돌 제조업 등의 사업이 영위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의 3 제 6 항 제 3 호, 제 4 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원]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 두 34726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3 항 제 4 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 사안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A 회사가 2015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다가 2016년부터는 감면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지급받은 2016 사업연도 정기배당 및 2017 사업연도 중간배당에 대하여, A 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한도 내에서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임

판결요지

이 사건 제외조항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7 조의 3 제 1 항 각 호가 규정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하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감면 등')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 사건 제외조항을 비롯하여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고, 이 사건 제외조항은 배당세액공제 제도의 일부로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함

이와 달리 법인이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시기에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법인세 감면 등이 종료한 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제외조항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가 아닌 그 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정작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자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역시 배당의 재원을 이루는데도,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까지 배당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등 배당세액공제 제도의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중과세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음

(...) 이 사건 제외조항은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7 조의 3 은 그 표제가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이고, 제 1 항 각 호에서 이 사건 제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구체화하면서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라는 현재형의 표현을 쓰고 있음. 이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이 현재 적용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임. 이와 같이 법문언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외조항은 어느 법인이 과거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한정하여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함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에서 제외될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7 조의 3 제 2항 제 2호는 원칙적으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총소득금액을 산식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단지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뿐, 그 적용에 선행하는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 요건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함. 직전 2 개 사업연도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가,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법인이 법인세 감면 등을 적게 받은 연도에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들이 더 많은 금액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법원]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 두 34772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 1919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 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및 판단기준

■ 사안

스포츠 의류, 신발 등 제품을 구입하여 대리점, 직영매장 및 온라인매장을 통해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이하 '이 사건 할인혜택') 제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임

판결요지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한도를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함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선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0.6.24. 선고 2007 두 18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할인액은 구 법인세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할인혜택은 △△△가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소외 2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에게도 제공되고, 마케팅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추천인에게도 제공되는 등 공통된 사업상 이해관계로 묶기 어려운 불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등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업이 통상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은 판매를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기 때문임. 이 사건 할인혜택은 통상의 접대, 즉 향응·오락·선물 등의 제공과 같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음

원고는 협력업체, 파견업체, 소외 2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이 사건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음. 이 사건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금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할인액이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예 해당하지 않고 당초부터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법원] 외국 금융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공동중개 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 두 35074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 16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의미

■ 사안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증권회사인 원고가 해당 금융투자그룹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관계회사에 분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 분배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증액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분배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 소정의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교육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교육세법 제 5 조 제 3 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 12 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음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구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4 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 315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 조 제 4 항 제 6 호 (가)목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1 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 1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해외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영업, 마케팅, 고객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고객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고객들의 주문을 국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인가를 받지 않고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구조에서 국내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와 더불어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뒤 각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응하여 이를 상호 분배할 수 있음. 이때 해당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된 중개행위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나의 거래에 여러 금융투자업자가 관여하여 수수료가 분배될 경우 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 21296 호로 신설된 것이었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수수료 전액을 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지급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면 실질귀속과 괴리되므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타사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가 수용되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가 신설되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제 8 호의 법문 중 '다른 회사'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도입경위에 부합하는 해석임

[조세심판원]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법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 지 0477, 2025.12.4., 경정)

■ 쟁점

청구법인이 오로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법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2.5.18. 구(舊) 주식회사 BBB(「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이하 “피합법법인”이라 함)를 합병하는 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의 증액 등기(이하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른 중과세율(1 천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2022.9.27. 쟁점등기는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피합법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중과세율(1 천분의 12)이 아닌 「지방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6 호 가목 2)에 따른 세율(1 천분의 4)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증가된 자본금 중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피합법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 천분의 4) 적용 대상으로 보아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환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 천분의 12)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제 1 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100 분의 300(이하 “중과세율”)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2 항 단서에서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립 등기 또는 자본 및 출자액을 증가시키는 등기가 오로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2.5.18. 쟁점등기를 하면서 피합법법인을 합병함과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은 피합법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합병과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오로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등기인 쟁점등기는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은 합병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 45 조 제 3 항이 이 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합병 후 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 사업과 중과제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중과세 적용 비율을 안분하는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과 피합법법인이 합병하여 오로지 중과 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28 조 제 2 항 단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 지 1538, 2025.12.16.,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2.7.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0 토지 13,340.6㎡(이하 “이 건 토지”)에 A 센터(이하 “이 건 A 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3.8.11. 이 건 토지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 제 7 호 나목의 세율(1 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 19232 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 6 조 제 1 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23.8.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4.10.8. 이 건 A 센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2024.12.24. 착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 78 조 제 4 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감면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추정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 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 두 14035,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 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3.8.1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4.10.8. 이 건 A 센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2024.12.24. 착공하는 등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공사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것이라거나 추후 대기업 등에 임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추후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예단하여 위 지특법 제 78 조 제 5 항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됨

[재정경제부]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제과-615, 2025.12.8.)

■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 72 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 조의 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 13 조 및 제 14 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행정안전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 상승차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587, 2025.12.24.)

■ 질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도급 약정 시 분양가 상승차익 배분액을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 18655 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舊지방세법’) 제 10 조 제 1 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 2 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 5 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지방세법 시행령」(2020.1.1. 대통령령 제 30318 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 18 조에서 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舊지방세법」 제 10 조 제 5 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등을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21 지 2321, 2022.5.26.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그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공사도급약정서 등 서류에 기재된 표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금액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대법원 95누 5967, 1996.2.9. 선고 참조)

시행사와 시공사가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도급약정서 상 도급공사비를 기본 도급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차익 배분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는 항목에 분양가 상승차익 배분액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사도급약정서 등에서 그 분양가 상승차익 배분액이 도급공사비 등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과 구분되는지, 배분액 산정 시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적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분양가 상승차익 배분액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서 공사대금과 관계없이 시공사에게 지급한 사업이익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할 사항임

[국세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797, 2026.1.22.)

■ 질의

창고업 영위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가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전국 거점에 물류창고 및 냉장·냉동창고 8 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냉동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구분
- 갑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예정이며 갑법인의 대표(30 년이상 경영, 지분 99%)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분할신설법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방식(임대창고)과 위탁보관계약에 따라 직접 물품을 보관·사용하는 방식(수탁창고)으로 운영
- 임대창고에 시설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유지 및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6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 유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해외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인 외국법인이 파트너십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 규정의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2494, 2026.1.29.)

■ 질의

호주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Partner)인 몰타법인이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조법 시행령 제 62 조의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3.11.25.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호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A 파트너십의 지분 등을 포함한 자산의 인수, 취득 및 운영을 주 영업목적으로 함
- '17.12.21. 몰타를 거주국으로 하는 B 파트너(Partner) 및 C 파트너(Partner, 통칭하여 '파트너')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파트너를 통하여 A 파트너십 지분의 35%를 보유하고 있음
- 파트너는 A 파트너십의 지분을 보유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는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음
- 파트너는 A 파트너십 소득의 35%에 상당하는 호주원천소득이 발생하며, 해당 호주원천소득은 호주 세법에 따라 파트너가 호주에 법인세(Income tax)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호주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임
- 질의법인은 파트너가 '22 사업연도 이전 XXX 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23.2 월 파트너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주에 소재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소득이 파트너(Partner)인 몰타 소재 외국법인(이하 'A 법인')에게 귀속되어, A 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호주에서 신고·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세전이익에 반영한 경우, A 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에 따른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호주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0, 2026.2.4.)

■ 질의

내국법인이 상법§461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함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 §461 의 2 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 119 조 제 2 호 및 법인세법 제 93 조 제 2 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